

국가별 설명자료

한국

귀하는 무상주식을 부여 받았으며 Renault Group 직원 대상 주식청약제도인 2025 Renaulution 주식청약제도(Renaulution Share Plan 2025)(이하 “본 청약”)에 따라 Renault 주식에 유리한 조건(취득 주식에 대한 30% 할인 및 매칭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Renault S.A.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본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 현지 청약 정보 및 귀하의 투자에 적용되는 주요 세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본 청약에 관련한 문서, 특히 안내책자 및 본 청약 조건과 함께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Renault Group, DIAC Group 또는 Renault Retail Group의 그룹 저축 제도 규정(Plan d'Epargne Groupe 또는 “PE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는 본 청약 웹사이트 www.renaulutionshareplan.renaultgroup.com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Renault 주식은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투자 가치는 Renault S.A.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나 Renault는 귀하에게 투자 자문이나 향후 Renault 주식 가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청약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공되는 문서의 내용, 투자의 성격 또는 본 청약과 관련된 비교 위험 및 혜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수권 받은 금융 자문인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현지 청약 정보

노동법 관련 면책 공고

본 청약은 귀하의 현지 고용주가 아닌 Renault S.A.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고용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청약에 대한 귀하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계속 고용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 청약은 유사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성하지 않으며, Renault S.A.는 향후 수년 내에 신규 청약을 개시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귀하가 본 청약에 따라 수령할 수 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는 이익 또는 혜택은 퇴직 또는 기타 복리후생 제도의 목적상 또는 귀하에게 지급될 수 있는 퇴직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금의 산정 목적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 보호

본 청약 시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처리, 정보 파일 및 개인의 자유 관련 1978년 1월 9일자 프랑스 법률 제78-17호(개정사항 포함),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EU 규정(2016/679)의 조항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이전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다음으로부터 해당 참여 양식에 포함된 정보가 전산처리됨을 안내 받습니다.

- 본 청약의 개인정보처리자인 122-122 bis avenue du Général Leclerc-92100, Boulogne-Billancourt-France에 주소지를 둔 Renault S.A.
- 청약 요청 수집 및 중앙화 담당 개인정보처리자이자 PEG 체계 내 취득한 자산의 계좌 보유자 자격이 있는 1, Boulevard des Italiens – 75009 Paris 에 주소지를 둔 BNP Paribas Epargne & Retraite Entreprises

- 해당 시 직접 은행 차변을 통한 주식 취득에 이용되는 본인의 은행계좌에 배당금 지급 담당 개인정보처리자인 La Défense - Cœur Défense - Tour A, 90-110 Esplanade du Général De Gaulle – 92400 Courbevoie 에 주소지를 둔 Uptevia

본 처리는 그룹 직원들에게 본 청약에 참여하고 무상주식을 수령할 기회를 제공하는 Renault의 합법적인 이익 및 귀하가 당사자인 본 청약에 대한 취득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운영을 그 법적 근거로 합니다. 귀하의 본 청약 참여 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귀하의 본 청약 참여 또는 귀하의 무상주식의 포기에 필수적이며 필요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요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의 참여 요청을 처리하고, 본 청약 시행에 관련된 규제 및 조세 요건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귀하가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귀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명백히 Renault S.A.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귀하의 고용주, BNP Paribas Epargne & Retraite Entreprises,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rance, Uptevia 또는 Renault S.A.로부터 위임 받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기 명시된 처리 목적상 본 청약 시행 및 PEG 관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적어도 귀하의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보유되며, 이후 가능한 분쟁의 제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목적을 위해 보유됩니다.

귀하는 122-122 bis avenue du Général Leclerc - 92100, Boulogne-Billancourt - France에 주소지를 둔 Renault S.A. 또는 8 rue du Port, 92728 Nanterre Cedex-France 에 주소지를 둔 BNP Paribas Epargne & Retraite Entreprises 에 연락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PEG 내 주식 매각 후, 법적 보관 요건에 따라) 열람, 수정, 정정 또는 삭제할 권리, 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귀하의 정보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 또는 귀하의 사망 후 개인정보의 보존, 삭제 및 전달에 관한 지침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각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에게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Renault S.A.: dpo@renault.com
- BNP Paribas Epargne & Retraite Entreprises: ere.dataprotection@bnpparibas.com
- Uptevia: dpo@uptevia.com

귀하는 CNIL에 우편(주소: 3, Place de Fontenoy, 75007 Paris, France) 또는 이메일(웹사이트: www.cnil.fr)을 통해 프랑스 정보보호당국이나 귀하가 속한 관할권의 관련 정보보호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 기록을 위해 본 신청서의 사본을 보관할 것을 진술합니다.

외환 규제 요건

귀하가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본 취득가격을 송금하기 전 현지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행정절차입니다. 본 청약과 관련하여 송금할 자금 및 입증서류(예: 본 청약 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

본 요약에서는 한국 세법 목적상 본 청약에 참가하고 투자 전 기간 동안 한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본 요약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이를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내용으로 신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세무 처리는 귀하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특히 국제적인 이동의 경우, 하기 설명되는 제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세무자문인과 상의하여 확정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시된 세무 사항들은 2025년 3월에 적용되는 세법 및 관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법 및 관행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과세

프랑스 국내법에 따르면, 귀하가 Renault S.A.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프랑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귀하의 Renault 주식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은 프랑스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당금 과세”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본 청약이 개시되는 시점에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본인의 무상주식 관련

예, 귀하에게 무상주식이 교부되는 일자 기준 무상주식의 시장가는 과세 대상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에 대하여 주민세를 포함하여 누진소득세율(6.6%~49.5%)로 과세되며,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여 4.004100%, 월 5,087,480 원 한도), 국민연금(4.5%, 월 277,650 원 한도) 및 고용보험료 0.90% 등 사회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무상주식에 대한 관련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30% 할인된 주식 취득 관련**

예,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 대상 혜택이며, 무상주식에 대하여 상기 명시된 바와 동일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혜택은 (i) 귀하에게 교부되는 일자 기준 주식 시가와 (ii) 그 취득 가격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 **매칭주식 관련**

예, 귀하에게 교부되는 일자 기준 매칭주식의 시가는 무상주식에 대하여 상기 명시된 바와 동일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 혜택입니다.

→ **본인 고용주가 제공한 지급 수단 관련**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급여 가불을 통해 취득 가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급여 공제를 통해 이를 상환합니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무이자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급여공제액만큼 감소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연 4.6%의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소득**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는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고용주는 소득세 연말정산시 귀하의 연말 과세 대상 소득에 인정이자를 실제로 가산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사회보험료 역시 부과됩니다.



Renault S.A.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투자 기간 동안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프랑스에서는 Renault S.A.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12.8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¹⁾.
과세 대상 금액은 귀하에게 지급되는 총 배당금액입니다.

주식 관련 배당금 수령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15.4%~49.5%)에 따라 과세됩니다.

배당금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된 해의 다음 해 5 월에 해당 배당금에 대한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한국 세액산정 목적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배당, 이자, 임대 등의 연간 총 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에 대해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귀하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될 수 있으며, 배당, 이자, 임대 등의 연간 총 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부유세 목적상 고려되니까?

아닙니다.

1 자 10
5



주식 매각 시, 처분제한기간 종료 시 또는 승인된 조기인출의 경우,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자산당/연간 최초 2,500,000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 공제를 초과하는 여하한 소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과세됩니다.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이익은 (i) 매각대금과 (ii) 직원이 청약가격을 지급한 주식의 시장가치(단 직원이 주식 취득 시점에 30% 할인 소득에 대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지급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간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무상주식 및 매칭주식의 경우, 이익은 귀하에게 (i) 매매대금과 (ii) 주식이 교부되는 시점 기준 주식의 시장가치(단 직원이 주식 교부 시점에 무상주식 및 매칭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지급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간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 보유 및 매각 또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한국 거주자는 외국의 해외금융계좌(즉, 한국 외의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잔액의 합이 1억원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6월에 해당 계좌를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배당금 및 양도소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된 다음 해 5월에 해당 배당금에 대한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